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358

2024. 1. 25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4. 1. 16. / 손정자 의원 등 9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체계 구축으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남양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- (기존)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 - (변경)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
- 위원회 변경
 - 자문위원회 → 운영위원회
- 목적의 재규정 (안 제1조)
- 정의, 시장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신설 (안 제2조~제4조)

-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 규정 (안 제5조~제12조)
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(안 제13조~제16조)
- 시행규칙 규정 (안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
- 현행 「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환자의 재활·복지·권리보장, 정신건강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
- 조례 개정 시 남양주 시민에 대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 되며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